

#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3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29.

발의자 : 이건태 · 양문석 · 김재원  
정성호 · 이기현 · 김성환  
박희승 · 김현정 · 강유정  
김기표 · 황정아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친족상도례 규정은 친족 간 관계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친고죄로 적용하도록 하여 가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며, 지적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예외없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.

또한 2024. 6. 27.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,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「형법」 제328조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

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.

이에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규정하고, 그 외의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28조).

##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28조(친족 간의 범행에서 고소 또는 피해자의 의사) ①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범해진 제323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친족 간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328條(親族間의 犯行과 告訴)</p> <p>① 直系血族, 配偶者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 한다.</p> <p>② 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.</p> <p>③ 前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2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328조(친족 간의 범행에서 고소 또는 피해자의 의사) ①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범해진 제323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친족 간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